

# 호서대학교 산학협력단 정관

## 제 1 장 총 칙

**제1조 (목적)** 이 법인은 호서대학교(이하 “대학”이라 한다)의 건학 이념과 벤처정신에 입각하여 산업체, 정부(출연 연구 기관 포함) 및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산업사회가 요구하는 창의력 있는 산업인력을 양성하고 새로운 지식·기술을 개발·보급·사업화하며, 산학협력을 위한 투자, 지원 및 공간임대를 통하여 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함과 동시에 지역사회와 국가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.(개정 2017. 5. 19)

**제2조 (명칭)** 이 법인의 명칭은 호서대학교 산학협력단(이하 “산학협력단”이라 한다)이라 한다.

**제3조 (사무소 소재지)** 산학협력단의 주된 사무소는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면 세출리 165번지 대학 내에 둔다.

**제4조 (업무 등)** 호서대학교 산학협력단 정관(이하 “정관”이라 한다)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산학협력단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.(개정 2017. 5. 19)

1. 산학협력계약의 체결 및 이행
2. 산학협력사업과 관련한 회계의 관리
3. 지식재산권의 취득, 관리, 이전, 사업화 촉진 및 보상에 관한 업무(대학 소속의 자가 포함되어 발명한 자유발명에 대한 수탁관리 포함)
4. 대학의 시설 및 운영의 지원
5. 산학협력수요와 활동에 대한 정보의 수집, 분석, 제공 및 홍보
6. 산학협력관련 사업의 유치 및 자체 사업의 기획·추진
7. 산학협력 촉진을 위한 장비, 기술, 인력, 교육 및 연구 등의 지원 업무
8. 대학 내 벤처·창업(실험실 창업, 학교기업 등)의 촉진에 관한 업무
9. 대학의 교지를 이용하여 설치된 협력연구소(국가, 지방자치단체, 정부출연 연구기관 및 산업체 등이 운영하는 연구소), 창업보육센터의 입주 기업, 창업 집적지 또는 산업기술단지 입주 기업(연구소 포함) 등에 대한 지원 및 상호 협력체계 구축
10. 산학협력사업 관련 업무담당자에 대한 교육 및 훈련
12. 벤처·창업기업에 대한 투자 및 지원 업무
13. 산학협력과 관련된 공간의 임대 및 지원 업무
14. 화학물질 안전교육 등 사업장 법정 교육, 직무 교육 및 화학사고 예방 지원 업무(신설 2018.10. 4)
15. 기타 산학협력 촉진을 위해 필요한 사업 및 부대 업무 일체

## 제 2 장 조 직

**제5조 (이사)** 산학협력단에는 이사 1인을 두며, 산학협력단장(이하 “단장”이라 한다)이 이사가 된다.

**제6조 (단장)** ① 산학협력단에 단장을 두며, 단장은 총장이 임명한다.

② 단장은 산학협력단을 대표하며, 총장의 지도·감독을 받아 그 소관 업무를 총괄한다.

③ 단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연임할 수 있다.

**제7조 (단장의 직무대행)**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산학협력단 운영규정(이하 “운영규정”이라 한다.)에 의하여 정해지는 자의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**제8조 (행정사무와 하부조직)** ① 산학협력단에는 정관 제4조의 업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산하에 필요한 기구를 설치·운영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된 세부 사항은 운영규정으로 정한다.

② 총장은 단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대학 교직원을 산학협력단에 파견하여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.

**제9조 (연구원 및 직원 등의 임면)** ① 산학협력단에는 자체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연구원과 직원을 임용할 수 있다. 이 경우 임용기간, 보수, 근무조건 등의 계약조건을 정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의 임용에 관련한 세부 사항은 운영규정으로 정한다.

③ 총장은 단장과 협의하여 제1항에 따른 연구원과 직원에게 대학의 교육, 연구 및 그 밖의 사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.

**제10조 (감사)** ① 산학협력단에는 감사 2인을 두며, 대학소속 교직원 또는 외부 전문가 중에서 총장의 승인을 얻어 임명한다.

② 감사는 산학협력단의 재산상황과 회계를 매년 1회 이상 감사하여야 한다. 감사결과 위법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산학협력단 운영위원회(이하 “운영위원회”라 한다)와 대학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③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
**제11조 (산학협력단 운영위원회 등)** 산학협력단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와 실무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과 기능에 관해서는 운영규정으로 정한다.

### 제 3 장 재산 및 회계

**제12조 (재산의 종류)** ① 산학협력단은 다음 각 호의 재산을 기본 재산으로 한다.

1. 설립당시 출연된 재산
2. 국가, 지방자치단체, 국내외 개인 또는 단체로부터의 증여재산
3. 국가, 지방자치단체, 국내외 개인 또는 단체로부터의 출연금, 기부금 또는 보조금

**제13조 (수입)** 다음 각 호의 재원을 산학협력단 수입으로 한다.

1.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출연금 및 보조금
2. 산학협력계약에 따른 수입금, 유가증권, 그 밖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
3. 산학협력 성과에 따른 수익금, 유가증권, 그 밖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
4. 산학협력에 관하여 접수한 기부금품
5. 산학협력단이 설치한 학교기업으로부터의 운영 수입금
6. 산학협력단의 기술 및 현금을 출자하여 설립한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로부터의 배당 및 그 밖의 수익금
7. 산학협력단이 보유한 기술을 출자하여 설립된 신기술 창업전문회사로부터의 배당 및 그 밖의 수익금
8. 산학협력단 소유의 연구시설, 실험·실습시설 및 장비에 대한 사용료
9. 이자수입
10. 기타 산학협력사업운영을 통해 발생한 수입금

**제14조(지출)** 산학협력단은 다음 각 호의 지출을 할 수 있다.

1. 산학협력단의 관리·운영비
2. 산학협력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경비
3. 대학의 시설·운영 지원비
4. 산학협력단 재원의 수입에 기여한 자(직원, 연구원, 대학 소속교직원 및 학생 등) 또는

산학협력관련 우수성과 도출자에 대하여 지급하는 보상금

5. 산학협력단이 설치한 학교기업의 운영비
6. 산학협력 기술지주회사에 대한 출자
7. 신기술 창업전문회사에 대한 출자
8. 산학협력관련 협의회 등의 사업비 및 운영 지원비
9. 지식재산권의 취득 및 관리에 관한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
10.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
11. 정관 제4조 각호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
12. 그 밖에 산학협력단의 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비

**제15조 (회계 관리)** ① 산학협력단의 소관에 속하는 모든 수입 및 지출은 이를 산학협력단의 회계에 계상하여야 한다.

② 회계는 산학협력에 관한 법령이나 산학협력에 관한 계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원별 또는 사업단위별로 별도의 계정을 두어 관리할 수 있다.

③ 산학협력단의 회계연도는 매년 3월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.

**제16조 (회계기관)** ① 단장은 산학협력단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.

② 단장은 수입 징수 또는 지출명령에 관한 사무를 각각 소속직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.

③ 산학협력단에는 그 수입 및 지출의 집행기관으로 수입원 및 지출원을 두며, 임명은 단장이 한다.

**제17조 (지출방법)** ① 지출은 지출명령이 있는 것에 한하여 지출원이 행한다.

② 지출은 금융기관의 수표 또는 계좌이체에 의하여야 한다. 다만, 소액지출에 대하여는 현금 지급에 의할 수 있다.

**제18조 (회계처리 등)** ① 회계처리는 신뢰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자료와 증거에 의하여 공정하게 하여야 한다.

② 산학협력단은 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한다.

③ 제2항의 재무제표는 대차대조표, 운영계산서 및 자금계산서로 한다.

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처리 및 재무제표작성에 관하여는 법령이 정하는바에 따른다.

**제19조 (예·결산자문기구)** 산학협력단의 회계처리와 관련하여 운영위원회를 예·결산자문기구로 정한다.

**제20조 (예산의 확정 및 제출)** ① 단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산학협력단회계의 예산안을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, 총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30일전까지 이를 심의·확정하여야 한다.

② 단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5일 이전까지 확정된 산학협력단의 예산을 총장을 경유하여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**제21조 (산학협력단의 결산)** ① 단장은 산학협력단의 사업연도 종료 후 50일 이내에 결산서를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의 결산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.

1. 대차대조표 및 대차대조표 부속명세서
2. 운영계산서 및 운영계산서 부속명세서
3. 자금계산서
4. 부속서류

③ 총장은 산학협력단의 사업연도 종료 후 70일 이내에 산학협력단의 결산을 심의·확정하여야 한다.

④ 단장은 확정된 산학협력단의 결산서를 총장을 경유하여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**제22조 (결산보고서의 비치 및 공개)** ① 단장은 결산이 확정된 때에는 주사무소에 결산 보고서를 5년간 비치하여야 한다.

② 단장은 이해관계인이 결산보고서의 공개를 요구하는 경우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.

## 제 4 장 보 칙

**제23조 (보상금의 지급)** ① 산학협력단 재원의 수입에 기여한 자(직원, 연구원, 대학 소속교직원 및 학생 등)에 대하여 지급하는 보상금은 재원의 성격, 수입금액의 정도, 지급대상자의 기여도 등을 참작하여 지급액을 달리하도록 하며, 그 구체적인 지급기준은 산학협력단 보상금 지급규정으로 정한다.

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은 단장이 총장의 승인을 얻어 지급한다.

**제24조 (정관의 변경)**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의 규정 변경 절차에 따라 대학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**제25조 (해산)** ① 산학협력단의 사업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으로 해산한다.

② 제1항에 의하여 산학협력단을 해산하였을 경우 잔여재산은 대학에 귀속된다.

**제26조 (공고의 방법)**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할 사항은 대학신문 또는 홈페이지에 공고한다.

### 부 칙(2008.8.18)

① (이전 정관의 폐지)이 정관 이전의 정관은 폐지하기로 한다.

② (시행일) 이 정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③ (경과조치) 이 정관 시행당시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이 정관에 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본다.

### 부 칙

① (이전 정관의 폐지) 이 정관 이전의 정관은 폐기하기로 한다.

② (시행일) 이 정관은 2017년 5월 19일부터 시행한다.

③ (경과조치) 이 정관은 시행당시 제1조(목적)과 제4조(업무 등)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이 정관에 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본다.

### 부 칙(2018.10. 4)

제1조(시행일) 이 정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

제2조(경과조치) 이 정관은 시행당시 제1조(목적)과 제4조(업무 등)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이 정관에 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본다.